<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안>

1. 회칙 개정안

번호	현행	개정/신설/폐지안	구분	개정/신설/폐지 사유
1	아세아연합신학대교 총학생회 회칙	아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	학교명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학생회라고 칭한다. (이하 본 회)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아신대학교 총학생회라고 칭한다. (이하 본 회)	개정	학교명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3	제 1장 총칙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복음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경건을 도모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과 회원 간의 화합을 구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발전에 힘쓰며 나아가서 선교 중심적 정의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총칙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복음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경건을 도모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과 회원 간의 화합을 구하여 아신대학교의 발전에 힘쓰며 나아가서 선교 중심적 정의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학교명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제 1장 총칙 제 4조(설치)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1장 총칙 제 4조(설치) 본 회는 아신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학교명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5	제 3장 전체학생 대표자회 제 16 조 (구성)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각 학부의 대표, 부대표 4. 사생회장, 사생회 총무 5.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총무	제 3장 전체학생 대표자회 제 16 조 (구성)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각 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4. 사생회장, 사생회 총무 5.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총무	개정	학부와 학과 동일하게 학생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임원 구성을 동일하게 변경하게 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6	제 6장 각 과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0 조 (구성) ① 각 과 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6장 각 과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0 조 (구성) ① 각 과 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각 학과, 학부 임원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7	제 6장 각 과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1 조 (임명) ① 총무, 회계, 서기는 부학생회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 6장 각 과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1 조 (임명) ① 회계, 서기는 부학생회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각 학과, 학부 임원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8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대표 및 부대표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① 각 학부 대표는 각 학부를 대표하여 부대표와 공동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회장 및 부회장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① 각 학부 학생회장은 각 학부를 대표하여 부학생회장과 공동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개정	각 학과, 학부 임원을 동일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9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대표 및 부대표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② 각 학부 대표 및 부대표는 매 학기 종강 학회 때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회장 및 부회장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② 각 학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매 학기 종강 학회 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임원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0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대표 및 부대표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④ 각 학부대표는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1절 회장 및 부회장 제 56조 (권한 및 구성) ④ 각 학부회장은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임원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1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7조 (구성) ① 각 학부 학생회의 임원은 대표, 부대표, 회계로 구성한다.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7조 (구성) ① 각 학부 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각 학년부장 으로 구성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임원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2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7조 (구성) ① 각 학부 학생회의 임원은 대표, 부대표, 회계로 구성한다.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8조 (임명) ① 회계, 서기는 부학생회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임원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3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8조 (임명) ① 대표, 부대표, 회계는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2절 임원 제 58조 (임명) ② 각 학년 부장은 각	개정	학과와 학부가 동일하게 임원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각 학부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임명된다.	학년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임명된다.		
14	-	제 7장 각 학부 학생회 제 3절 학년부장 제 59조 (의무 및 권한) ① 각 학년 부장들은 학생회장의 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신설	학과와 학부가 동일하게 임원직이 조정됨에 따라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함.
15	제 8장 재정 제 59조 (경비) ④ 총학생회비 중 1/3인 각 학과 학생회, 각 학부 학생회의 재정의 인출 및 집행은 해당 학 과 학생회장, 각 학부 대표의 결재에 의한다.	제 8장 재정 제 60조 (경비) ④ 총학생회비 중 1/3인 각 학과 학생회, 각 학부 학생회의 재정의 인출 및 집행은 해당 학과 학생회장, 각 학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학부 임원직이 조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6	제 8장 재정 제 61 조 (예산의 편성, 심의) ① 본 회의 학생회비 중 2/3는 집행부에서 편성 책정하여 총 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제 8장 재정 제 62 조 (예산의 편성, 심의) ② 본 회의 학생회비 중 1/3은 학과 학생회 및 학부 학생회에서 편성 책정하여 각 과 학생 회장, 각 학부 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학부 임원직이 조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7	제 8장 재정 제 63조 (결산보고) ④ 각 과 학생회장, 각 학부 대표는 학생회비에 해당하는 각 과 및 학부 학생회의 결산을 종합하여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 8장 재정 제 64 조 (결산보고) ④ 각 과 학생회장, 각 학부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에 해당하는 각 과 및 학부 학생회의 결산을 종합하여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학과와 동일하게 학부 임원직이 조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8	제 9장 선거 관리 제 65 조 (선거시기) ① 전체학생대표자(총학생회 및 각 과 학생회)선거는 11월 셋째주, 3일 간 실시한다.	제 9장 선거관리 제 66 조 (선거시기) ① 전체학생대표자(총학생회 및 각 과, 학부 학생회)선거는 11월 셋째주, 3일간 실시한다.	개정	학부도 다른 자치기구와 동일하게 직접선거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9	제 9장 선거관리 제 66조 (구성)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총학생회 대표자 1인(집행부 및 행정각부)과 추천인 2명, 학생회장단에서 임명하는 학과 학생회 대표자(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인과 추천인 2명,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 9장 선거관리 제 67조 (구성)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총학생회 대표자 1인(집행부 및 행정각부)과 추천인 2명, 전체학생대표자회에서 임명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 대표자 1인(각 학과, 학부 및 자치기구)과 추천인 2명,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전체학생대표자회 임원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0	-	Ⅲ. 총학생회 선거법 제 1장 선거 시행 세칙 제 2 조 (피선거권) ③ 각 학부 학생회장, 각 학부 부학생회장	신설	다른 학생자치기구와 동일하게 직접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21	제 1장 선거 시행 세칙 제 3 조 (입후보자 등록 자격) ④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각	제 1장 선거 시행 세칙 제 3조 (입후보자 등록 자격) ④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다른 학생자치기구와 동일하게 직접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각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각 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2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5 조 (구성) 총학생회 대표자 1인과 추천인 2명, 학생회 대표자 1인과 추천인 2명, 총 6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명하여 선출한다.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5 조 (구성) 총학생회 대표자 1인과 추천인 2명, 전체학생대표자회 대표지 1인과 추천인 2명,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명하여 선출한다.	개정	전체학생대표자회 임원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3	제 3장 입후보자 등록 제 10조(등록서류)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 각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제 3장 입후보자 등록 제 10조(등록서류)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 각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각 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	개정	다른 학생자치기구와 동일하게 직접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24	Ⅴ. 졸업준비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라고 칭한다. (이하 본회)	Ⅴ. 졸업준비위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아신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라고 칭한다. (이하 본회)	개정	학교명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